

2018년도 수시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안내

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용자추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

I 지원근거

- 「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 및 11조
- 「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

II 지원규모

- 지원규모 : 94억원(연간841억원)
 - 군비 보전분 : 93억원
 - 도비 보전분 : 1억원

III 세부 운영계획

1 용자지원 대상

- 칠곡군 관내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 - 용자신청일 현재 칠곡군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
 -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
 -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 -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
 -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(단, 여관업은 제외)
 -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
-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
(단, 자동차 부분정비업,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)
-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
※ 단, 아래의 '도 중점 육성기업' 경우, 지원업종 제한 없음
(도 중점 육성기업) 사회적기업, 일자리창출 우수기업(최근 3년 이내), 청년고용 우수기업(최근 3년이내), 실라리안 기업, Pride 기업, 향토뿌리기업

② 용자추천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※ 단,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(예, 재해자금 등)
- 용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 업체는 당해연도 내 재추천 불가
-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용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(단, 서류심사기간 내에 청산할 경우 추천 대상)
- 동일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시 1개 업체만 추천가능(대표자 기준)
- 용자신청일 현재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(금융분야)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
③ 용자조건 및 한도

- 용자조건
 - 가) 상환기간 : 1년 거치 약정상환
 - 나) 대출금리 : 용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2% 감한 금리
 - 다) 대출기한 : 2018. 12. 31. 까지 반드시 대출완료
※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실효 됨(연장불가)

○ 용자한도액

가) 일반업체 : 3억원 이내 (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)

-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: 200백만원
- " 3억 이상 ~ 30억 미만 : 250백만원
- " 30억 이상 : 300백만원

※ 매출액은 칠곡군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

나) 우대업체 : 5억원 이내 (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)

-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: 300백만원
- " 3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 : 400백만원
- " 30억원 이상 : 500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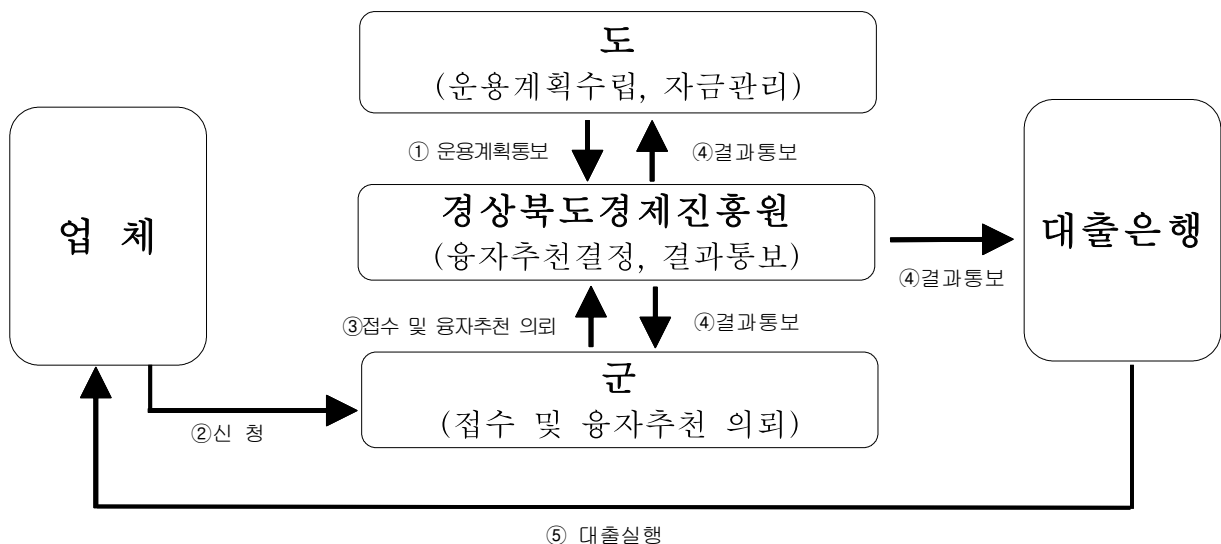
다) 용자한도 우대업체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
-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 기업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의한 사회적 기업
-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(최근 2년 이내)
-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(최근 3년 이내)
- 경상북도중소기업대상·산업평화대상·고용증진대상·신성장기업·일자리창출 우수기업·청년고용 우수기업·시니어친화기업·정규직전환 우수기업(최근 3년 이내)
-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·가족친화인증업체(최근 3년 이내)
-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‘SILLARIAN’ 선정 업체
- ‘경북 PRIDE상품’ 선정 업체
- ‘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’ 선정 업체
-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(최근 3년 이내)
- 수출유망 중소기업(중소기업청 인증, 최근 3년 이내)
-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
- 농공단지 입주업체

-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업체
- ‘칠곡군 스타기업’ 인증업체 (칠곡군분에 한함)
 - ※ 기간제한이 없는 우대사유(예, 여성기업, SILLARIAN 선정 업체 등)에 대해서는 접수액이 추천계획금액 초과 시 일반 업체로 처리 (접수액이 계획금액 범위 내일 경우 우대업체 처리)

4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

- 신청 기간 : 2018. 10. 1. ~ 10. 18. (토,일,공휴일 제외)
 - 자금소진 시 접수조기마감
- 신청서 접수 기관 : 일자리경제교통과 투자통상담당
 - ※ 신청서 : 군홈페이지(www.chilgok.go.kr) /산업경제/기업지원 정보에서 운전자금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
- 도·군분은 구분 없이 접수 후 선착순으로 도분 우선배정 (단, 도자금 배정액 소진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)
- 처리절차 : 은행협의 및 신청(업체) ⇒ 접수 및 용자추천의뢰(군) ⇒ 용자추천 결정 및 통보(경북경제진흥원) ⇒ 대출실행(업체)
- 업무처리 흐름도



○ 신청 구비서류

- 가)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(서식1)
 - 나) 사업계획서(서식2)
 - 다) 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및 이용 동의서(서식3)
 - 라)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마) 2017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2017년도 하반기·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- 바) 공장등록증
 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「소기업」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(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)
 - 사)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
 - 아)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1부(서식 1 융자신청서 뒷면 참조)
 - 자)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
 - 수상 및 지정(입주)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
 -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
 -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※ 사본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
5] 대출방법

○ 대출방법

- 가) 융자추천 통보서를 지참하여 대출기한 내(2018. 12. 31.)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(반드시 신규대출 실행)
 - ※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융자추천 실효
- 나)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 (동일은행간 분할 가능)

- 다) 대출은행 변경 시 : 칠곡군에 신청 후 경제진흥원에 변경승인
 - ※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은 불가
- 라) 담보는 물건담보, 신용담보(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)등 은행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제공

- 마) 사업장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칠곡군에 변경사항 접수
 -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
 - 도분은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 시는 이차보전금 지원
(이전 시군에 변경사항 신고)
 - 군분은 도내 타시군 이전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

바) **은행과 사전협의, 담당자 확인 날인 후 운전자금 신청**

○ **협력은행 : 14개 은행**

[대구·국민·기업·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은행·스탠다드차타드·산업·
씨티·경남부산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·경북지역본부 소속 새마을금고]

※ 도·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용자이므로 은행권의
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(물건담보, 신용담보 등 제공)

6 이차보전

1) 지급시기 : 연 2회 (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)

2) **보 전 율 : 2%** (1년간 지원)

3) 신청절차 : 대출은행 ⇒ 도·군 일괄신청

4) 이차보전 제한사유

-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및 은행신청 대출지급 정지 업체 제외
- 부도·폐업·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이차보전
-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
- 동일업체로 연간 중복하여 이차보전을 받지 못함(재해 등의 경우는 예외)

5) 이차보전금 지급 : 도, 군 ⇒ 용자취급은행(모점)에 일괄지급